

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장상기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946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20년 10월 16일

발 의 자 : 장상기, 경만선, 권영희, 김생환,
김용연, 김춘례, 김화숙, 문병훈,
서윤기, 오한아, 오현정, 이동현,
이상훈, 이승미, 이영실, 임만균,
전병주, 최선 의원(18명)

1. 제안이유

- 서울의 준공업지역은 기존 제조업 및 지식산업, 정보통신산업 뿐만 아니라 미래 신산업공간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한편,
- 산업시설의 노후화, 공장과 주거의 혼재에 따른 열악한 정주환경 등 여전히 낙후된 지역이라는 인식의 개선을 위해 지역의 정비가 필요함
- 이에 '20.5.6 정부가 발표한 「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」 중 준공업지역 제도개선 부분의 취지를 반영하여 준공업지역 내 대규모 공장부지 등을 대상으로 정비사업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함임

2. 주요내용

- 한국토지주택공사,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면서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경우, [별표 2] 제2호에 따른 산업부지 확보비용의 상한을 40%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함(안 [별표 2]제3호마목 신설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 참조

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[별표 2] 제3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[별표 2]

3. 산업부지에 설치할 수 있는 산업시설의 범위

마.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「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」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면서 단독 또는 민간 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가목의 산업부지 확보비율 상한을 40%까지 완화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산업부지 확보비율 완화 규정의 유효기간) [별표 2] 제3호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건축허가를 신청(건축허가가 의제되는 경우와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기 위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)한 경우까지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[별표 2] 준공업지역내 공장부지(이적지 포함)에 대한 공공주택 허용기준 (제35조제1호 관련)</p> <p>1. (생략) 2. 산업부지 확보비율 가. ~ 라.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 <p>3. ~ 4. (생략)</p>	<p>[별표 2] 준공업지역내 공장부지(이적지 포함)에 대한 공공주택 허용기준 (제35조제1호 관련)</p> <p>1. (현행과 같음) 2. 산업부지 확보비율 가. ~ 라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마.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</u>가 「<u>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</u>」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<u>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면서 단독 또는 민간 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가목의 산업부지 확보비율 상한을 40%까지 완화할 수 있다.</u></p> <p>3. ~ 4. (현행과 같음)</p>
	<p>부 칙</p> <p>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 <p>제2조(산업부지 확보비율 완화 규정의 유효기간) [별표 2] 제3호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건축허가를 신청(건축허가가 의제되는 경우와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기 위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)한 경우까지 적용한다.</p>